

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성북!

성북구



수신자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145-9 박금성 외 13인 귀하
(경유)

제목 민원 회신 (장위5구역)

1. 평소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.
2. 선생님들께서 장위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구에 제출하신 민원은 현재 관리처분총회무효소송 및 관리처분효력정지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장위5구역 철거 지역 확정을 유보하여 달라는 내용으로
3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(건축물의 철거 등) 제1항에 ‘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.’라고 정하고 있을 뿐, 철거 지역 확정에 대하여 명시된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 끝.

성북구청장

주무관 이일순 뉴타운사업1담당 강우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도시환경국장 02/26 김장수

협조자

시행 주거정비과-2207 () 접수 ()

우 136-706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(삼선동5가) / <http://www.seongbuk.go.kr>
전화 02-2241-2832 /전송 02-2241-6545 / august@sb.go.kr / 대시민공개